

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2. 21 ----- 사하구청장
 나. 회부일자 : 2005. 12. 22
 다. 상정일자 : 2005. 12. 23.(제13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재난안전과장 양종호)

가. 제안이유

-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일부개정 [2005. 1. 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]됨에 따라 겨울철 설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책임(안 제3조)
 -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,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·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
-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순위(안 제4조)
 - 소유자 건축물내에 거주시 :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
 - 소유자 건축물내에 미거주시 : 점유자 또는 관리자, 소유자순
-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범위(안 제5조)
 - 보도 :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
 -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: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
- 제설·제빙작업의 시기(안 제6조)
 -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함.
 단, 야간(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)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
- 제설·제빙작업의 방법(안 제7조)
 -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,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함

-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제하는 재료나 모래등을 뿌려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함
- 제설·제빙작업의 도구 비치·관리(안 제8조)
 - 건축물관리자는 제설·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·관리해야 함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나 교통두절 등 주민의 불편과 안전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문화를 정착시키고
- 주민들에게 재난, 재해 없는 삶의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됨
- 또한 광주시 남구를 비롯하여 부산시 중구 등 4개구에서는 기히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거나 공포중에 있으며, 영도구 등 10개구에서는 의회상정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
- 반면 서울시와 부산진구청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안전 사고 책임공방과 조례안에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
- 그러나 선진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건물주의 자기 집 앞 눈치우기 의무조항이 상례화 되어 주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 조례상 벌칙규정이나 안전사고 책임공방에 따른 대응방안 등 공·사익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시·도나 타구의 사례등을 참고하여 보완함으로써 한치의 오차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 부서장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
- 특히 『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』 등 관련법령에 건물주의 자기 집 앞의 눈치우기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건물주의 사회적 책임 등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 한다면 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